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4일, 배현진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1) 상정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5)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3.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배현진의원)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치유와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Global Wellness Institute(2023)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 관광의 시장 규모는 약 6,510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웰니스 경제 규모는 5조 6,000억 달러를 기록했음.

이와 같이 치유관광산업 성장과 중요성,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치유관광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동 법을 근거로 체계적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현황 및 통계 자료 구축, 치유관광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통하여 치유관광의

성장과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관광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의 창출 및 치유관광을 추구하고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치유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및 구성체계

(1)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층의 우울감,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 등도 확대됨에 따라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추구하는 '웰니스관광'[1]이 주목받고 있음.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의 조사[2]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로[3], 2027년까지 연 평균 16.6% 성장하여 1조 3,9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2019년 7,204억 달러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3,506달러(-51.3%)로 감소하였지만, 2021년 4,668달러, 2022년 6,507달러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성장률 36.2%로 시장 규모를 회복하고 있음.

---

1)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운동(Fitness)의 합성어로, '웰니스관광'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을 의미함.

2) Global Wellness Institute, 「The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2023」

3) 원화 903조 415억원[2024. 7. 22. 환율(1USD=1,387,80원) 기준]

동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54억 달러임. 물론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83억 달러에서 2020년 44억 달러로 대폭 감소(-47.2%)한 이후 2021년 50억 달러, 2022년 54억 달러로, 시장 규모의 회복 속도(연평균 11.3%)가 전세계 평균(연평균 36.2%)에 비해 더디기는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가 세계 17위로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국민소득이 증대되면서 국민 여가시간과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여행 트렌드에도 반영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7년부터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등 '웰니스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코로나 19를 거치면서는 관련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치유와 일상회복을 위한 웰니스관광 체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 기준 총 8,400명이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4]를 보였으며, 참가자의 97.7%가 웰니스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4) 웰니스 프로그램 만족도 4.63점(5점 만점)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등 10개 특별시·광역시·시·도[5]에서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특히 강원도의 경우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2023년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정선군이 선정되며, 10～11월 정선군에서 개최한 '치유관광 페스타'에 국내외 관광객 약 24만명 웰니스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웰니스관광'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대상, 사업 범위, 재정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산업으로서 체계적인 육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웰니스관광 육성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은 '추천 웰니스 관광지' 지정을 중심으로 한 홍보와 상품개발 지원이 대부분임. '추천 웰니스 관광지'도 화장품 체험매장, 한방진료센터, 스파 등 개별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이를 지역관광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임.

5)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해양자원, 산림자원 등 '웰니스자원'에 대한 개발 및 활용 사업이 단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부처에서 개발한 '웰니스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육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음.

[표] 부처별 웰니스 관광자원 개발 현황

부처명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근거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추진 사업	● 해양치유센터 : 지역 해양자원(해수, 머드, 해조류 등)을 활용,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객 유치	● 치유의 숲 : 면역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 등 운영	●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 치유농장, 거점별 치유농업센터,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운영

따라서, 제정안은 '웰니스관광'을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치유관광사업 등록,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단절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치유자원’을 관광산업에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으로 보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본칙 6개의 장, 27개의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됨. ① 제정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총칙 규정 ②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실태조사·통계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보칙 규정 ⑥ 벌칙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안 제1조)	ㅇ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정의 (안 제2조)	ㅇ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 ㅇ치유관광자원: 경관, 온천, 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 ㅇ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ㅇ치유관광사업자: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ㅇ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치유관광산업지구, 치유관광서비스 등

구 분	주요내용
국가 등의 책무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방안 마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름
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및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변경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관계 시·도지사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등록, 등록취소, 양수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인증취소 (안 제11조 및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취소
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안 제13조 및 제14조)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전달 등을 위한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 시·도지사가 전문지원기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지정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기업 등과 공동 연구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 수립·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구 분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등 (안 제18조 및 제19조)	ㅇ지방자치단체의 장, 치유관광사업자, 단체 등 재정 지원 ㅇ치유관광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
제4장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지정 해제, 지원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ㅇ시·도지사의 신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ㅇ시·도지사는 발전계획 수립하여 제출 ㅇ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등 지정 해제 등
보고·검사 등, 권한의 위임·위탁 (안 제23조 및 제24조)	ㅇ전문지원기관, 지원센터,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자료제출, 현장출입·검사 등 조치 ㅇ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탁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ㅇ1년 후 시행

다. 조문별 검토

(1)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2조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관련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하며, 그 외 치유관광사업 및 치유관광사업자, 치유관광산업지구 등을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관련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치유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치유관광사업자”란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치유관광산업지구”란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을 상호 연계하거나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특화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치유관광서비스”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검토의견

정의규정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에 따른 정책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효과가 있음.

제정안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웰니스관광’이라는 용어를 ‘치유관광’으로 정의하였는데,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자원 개발 및 활용 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웰니스’의 개념을 ‘치유’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 법률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치유’에 관한 입법례]

법률명	입법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법률명	입법례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치유관광’을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한 점에 대해서는 ‘웰니스’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 및 행복한 삶의 추구 등 내용을 반영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경관, 온천, 음식 등을 예시로 들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시행령에서 ‘해양치유자원’ 등 타 부처 소관 치유관광자원을 포함하는 ‘치유관광자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3조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3조 및 제4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검토의견

안 제3조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의규정) 관련 입법례]

법률명	조항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 안 제4조 관련, 현행 타부처 소관의 '치유' 관련 법률에서는 치유자원 등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의 수립, 치유 관련 시설의 조성, 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과 중복되거나 상충될 수 있음.

[제정안과 상충될 수 있는 '치유' 관련 법률의 주요 규정]

법률명	주요 규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부터 제8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제9조부터 제21조) ◦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제22조부터 제30조) - 해양치유관리단 설립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전문인력 양성,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제4조, 제5조) ◦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레포츠 지도사 등(제11조의2부터 제12조의2까지)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 숲길 등(제22조의2부터 제28조까지)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실태조사,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제8조부터 제10조) - 연구개발보급, 지자체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등 ◦ 치유농업사의 자격 위촉 및 양성 등(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제정안에서 기존 치유 관련 법률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기존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률 적용상 제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5조 및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5조 및 제6조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관광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치유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안 제5조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관광산업 육성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 또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안 제6조), 치유관광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부처에서 개발·운영 중인 '치유자원'을 관광산업에 연계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 원문]

안 제7조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안 제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타 부처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치유자원을 연계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치유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해양, 산림, 농업 등 개별 치유자원의 개발은 각각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관광산업에 활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연계하는 것은 관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다른 부처 또는 기관에서 소관하거나 추진한 사항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입법례]

법률명	입법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5)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등록취소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8조는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는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치유관광사업을 양수한 경우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8조(치유관광사업의 등록) ①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유관광사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사업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치유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치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치유관광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치유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치유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현재 치유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스파, 온천, 한방진료센터, 산림욕장 등으로 광범위하지만 전문적인 사업으로서 지원과

육성은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안 제8조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를 치유관광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사업으로서 재정적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이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등록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등록의 결격사유, 처벌이나 과태료 조항 등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동 제정안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의 진흥법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안 제9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유관광사업자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로 관리되고 및 관광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등록취소에 대하여 청문절차 대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이 재량행위임을 감안할 때 등록취소 처분이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정도가 크거나 장기간에 걸쳐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임.

체계·자구적인 측면에서는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별도로 약칭된 바가 없음. 이에 안 제9조제1항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기관의 장’으로 약칭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6)]

6) 수정의견

제정안	수정의견(안)
제9조(등록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유관광사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

(6)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및 인증취소(안 제11조 및 제12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1조는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인증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갱신 및 승계, 인증에 관한 평가, 인증표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인증받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해당하게 된 사업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검토의견

‘인증’은 정부 등이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서,

우수치유관광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치유관광시설에 대하여 치유관광의 수요자에게 우수한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치유관광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7] 등에서도 관련 사업자나 시설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분야의 정책을 지원·육성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우수인증표시 사례]

인증 분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우수해양치유 프로그램	우수사업자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 단체
인증 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해양치유 프로그램 http://www.mof.go.kr 인증번호 제 호 해 양 수 산 부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ARTISTREE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ARTISTREE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 (제3조 관련)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표시(제16조 제1항 관련)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제5조 관련)	문화예술후원 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 (제3조 관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우수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치유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제정안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서 인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우수관광치유시설의 인증취소에 대하여는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취소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8].

(7)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정지원 등(안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5조는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 전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관광산업 등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는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치유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8) 참고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경우 인증취소시 청문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제15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치유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운영 지원 3.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4. 치유관광서비스 운영 지원 5. 치유관광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6.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와 지원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정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치유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안 제1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기준을 갖춘 전담 인력 또는 조직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및 관련 사업 창업·운영 지원 등을 하게 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을 관광산업으로서 전문적·체계적 육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또한,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정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 간 연계 거점 역할을 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지역관광에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입법례]

법률명	입법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 서비스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설립·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7조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유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치유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필요시 청문절차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9].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비용지원 규정(안 제17조제4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이미 기금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10] 재정지원 규정(안 제18조)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복조항으로서 각각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9) 참고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을 필요적 절차로 두고 있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취소의 경우에만(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제외) 청문을 필요적 절차로 두고 있음.

1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8)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원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20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함)의 신청으로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관광산업지구 신청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사항과 지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는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및 절차 등, 안 제22조는 치유관광산업지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0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지구의 개념ㆍ목표ㆍ위치 및 범위 2.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프로그램 현황 3.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사업자 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 방안 4.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2.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도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치유관광산업 간의 적합성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치유관광산업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치유관광산업지구 내에 관련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치유관광산업지구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프로그램·교육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역 내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역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치유관광산업지구는 치유관광 관련 사업자와 시설을 새로운 형태의 관광매력으로 창출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가 제도화될 경우, 202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적 수준의 웰니스·의료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보다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개요]

※ 사업개요: **의료**(치료·미용·예방)·**웰니스**(회복·치유) **융복합 관광 자원 발굴, 기반구축** 및 **마케팅**으로 **세계적 수준 웰니스·관광 목적지** 조성
('23～'25년 대구·경북,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요소	주요내용
융복합	1. 지역별 핵심·보조거점 연계 및 체험 콘텐츠 확충
	2. 관광자원 연계 상품화(음식, 공연 등 융합)
	3. 광역 의료·웰니스 관광 자원 재구조화
기반 구축	1. 광역 통합 의료·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
	2. 관광 접근 편의 기반 구축(교통, ,숙박, 경관개선)
해외 마케팅	1. 광역 관광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지역 관광시설 연계)
	2. 해외 웰니스·의료 자매도시 및 교류
	3. 국제 컨퍼런스 참가 및 해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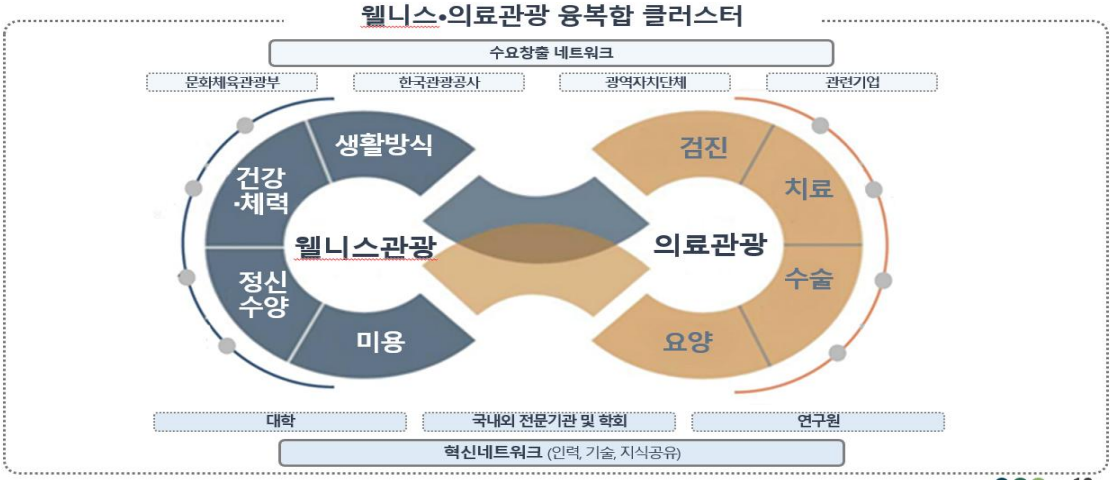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안 제20조제1항이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신청권자(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것은 개별관광기금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조치였던 것으로 보임.[11]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개별관광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과,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치유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도 동일하게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12]을

1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으로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개별관광기금(제주관광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은 어려움.

12)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항 의견임

감안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신청권자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9) 벌칙 및 과태료(안 제25조 및 제27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25조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안 제27조는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우수관광시설 인증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제정안 원문]

안 제25조 및 제27조
제25조(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 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에 대해서만 위반행위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정안의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진흥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에 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체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두려고 한 취지로 보임.

다만,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인 '100만원 이하'보다 높은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13]

---

13)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③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조항의 실효성,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없 음